■ 전파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7. 1. 24.>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제90조제2항제1호 관련)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 250,000원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대역 \ 전파사용량(㎒)	0.1 미만	0.1 이상 0.3 미만	0.3 이상 1.5 미만	1.5 이상 4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10 미만	11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 미만	1	2	3	5	7	9	12	15	19	23	28	33	38	44	50
1㎓ 이상 3㎓ 미만	0.7	1.4	2.1	3.5	4.9	6.3	8.4	10.5	13.3	16.1	19.6	23.1	26.6	30.8	35
3㎓ 이상 10㎓ 미만	0.23	0.47	0.70	1.17	1.64	2.11	2.81	3.51	4.45	5.38	6.55	7.72	8.89	10.3	11.7
10㎓ 이상 30㎓ 미만	0.03	0.07	0.10	0.17	0.24	0.31	0.41	0.51	0.65	0.78	0.95	1.12	1.29	1.50	1.7
30㎓ 이상	0.004	0.008	0.012	0.02	0.028	0.036	0.048	0.06	0.076	0.092	0.112	0.132	0.152	0.176	0.2

비 고: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량계수를 위 계수에 3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서비스계수

무 선 국		계 수
가. 고정국	1) 마이크로웨이브용 무선국	0.5
	2)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0.25
	3) 도서통신용 무선국	0.05
	4) 그 밖의 고정국	1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0.03
다.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		0.012
라. 그 밖의 무선국		1

5.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

공용화율, 환경친화율(%)	10 미만	10 이상 20	20 이상 30	30 이상 40	40 이상 45	45 이상 50	50 이상 55	55 이상 60	60 이상 70	70 이상 100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환경친화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비고

1. 공용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환경친화율: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